

제248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심사안건
검 토 보 고 서

「금천구 중소기업 디자인 개발 지원사업」
공공기관 위탁 동의안
(기획경제국 지역경제과 소관)



행정재경위원회
전문위원

「금천구 중소기업 디자인 개발 지원사업」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

1. 제안경위

- 가. 의안번호 : 제2466호
- 나. 제출자 : 금천구청장
- 다. 제출일자 : 2024. 2. 2.
- 라. 회부일자 : 2024. 2. 2.

2. 제안이유

- 중소기업 디자인 개발지원 및 컨설팅이 필요한 기업에게 체계적·효율적·전문적 지원을 위해 디자인 분야에 특화된 공공기관에 위탁을 추진함으로써 기관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속성을 확보하고자 함.
- 이에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·대행에 관한 조례 제8조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 위탁·대행 추진 근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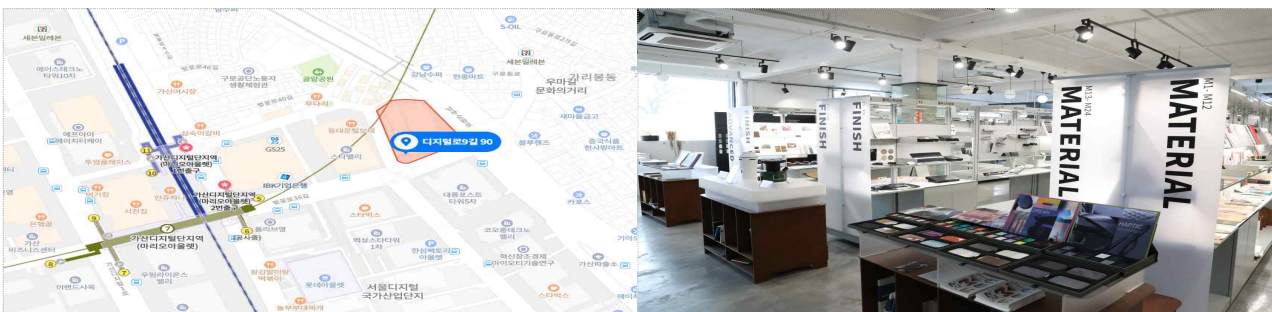
- 1)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 제2항, 제3항
- 2) 금천구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6조 제1항, 제7조, 제13조
- 3)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8호 사목

나. 위탁·대행 추진 필요성

- 1)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 및 시스템을 갖춘 공공기관에 위탁함으로써 사업 운영의 효율성 및 전문성 제고
- 2) 공공기관의 전문성 및 시스템을 바탕으로 디자인 개발 지원 및 컨설팅이 필요한 중소기업 선정에 있어 공정성 확보
- 3) 디자인 전문 인프라 구축이 미비한 관내 중소기업에 전문적인 맞춤형 디자인 개발을 지원하여 기업 상품 가치 증대 및 기업 경쟁력 강화
- 4) 디자인 전문기업(수행기업)-참여기업 매칭을 통해 맞춤형 디자인 개발 지원 및 개발 디자인 활용을 통한 중소기업, 디자인 전문기업의 동반성장에 기여

다. 위탁·대행 사무 주요 내용

- 1) 대상 사업 : 금천구 중소기업 디자인 개발 지원사업
- 2) 위탁 기간 : 협약일 ~ 2026년 12월 31일
- 3) 위탁 기관 : 한국디자인진흥원¹⁾
 - 소재지 :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양현로 322
 - 위탁 시설 : 한국디자인진흥원 서울 디자인주도 제조혁신센터
 - 위탁 시설 소재지 : 서울시 금천구 디지털로9길 90



- 1) 한국디자인진흥원은 산업디자인의 연구 및 개발을 촉진하고 산업디자인의 진흥을 위한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(1970년 창립,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양현로 322, ☎ 031-780-2114)

- 지원 시설 : CMF쇼룸(약70㎡), 멀티스튜디오(약52㎡), 크리에이티브 스튜디오(약26㎡), 제품스튜디오(약16㎡), 편집실(약10㎡), 컨퍼런스룸(약50㎡)

4) 위탁 사업 내용 : 「디자인주도 제조혁신 모델(Design 7 UP Innovation)」



- 전문가 컨설팅 진단을 통한 문제점 분석 및 디자인 개선 전략 도출
- 우수 컨설팅 수혜기업을 선정하여 디자인 전문기업과의 매칭 및 개발 지원
- 우수 수요맞춤 디자인 개발 수혜기업을 선정하여 제조지원 컨설팅 및 홍보 지원

5) 소요 예산 : 250백만원(구비)

4. 관계법령

-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3조 제2항, 제3항
- 「서울특별시 금천구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」 제6조
- 「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·대행에 관한 조례」 제4조, 제5조 제8조

5. 검토의견

- 본 동의안은 「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·대행에 관한 조례」 제8조 제1항에 따라 자치사무를 공공기관에 위탁·대행하고자 사전에 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건으로
- 참고로 한국디자인진흥원에서 운영하는 디자인주도 제조혁신 센터는 디자인 역량이 취약한 중소·중견 제조기업들이 디자인을 통해 신상품 기획력과 개발 경쟁력을 높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전국 산업단지 내 7개 거점센터를 구축하여 제조 디자인 융합 제품 개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.
- 관련 내용을 검토한 결과 「금천구 중소기업 디자인 개발 지원 사업」을 기업의 역량진단 컨설팅, 수요맞춤 디자인 개발, 제조·양산 컨설팅, 홍보 마케팅에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한국디자인진흥원에 위탁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됨.

붙임 : 관계법령 1부. 끝.

중소기업기본법

[시행 2024. 1. 9.] [법률 제19992호, 2024. 1. 9., 일부개정]

제3조(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① 정부는 중소기업의 혁신역량과 경쟁력 수준 및 성장성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의 특성에 맞도록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중소기업시책을 세워 실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1. 7. 25.>

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시책에 따라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지역의 중소기업시책을 세워 실시하여야 한다.

③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호간의 협력과 중소기업시책의 연계를 통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 <신설 2011. 7. 25.>

[제목개정 2011. 7. 25.]

서울특별시 금천구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

[시행 2022. 8. 15.] [서울특별시금천구조례 제1249호, 2022. 8. 15., 일부개정]

제6조(마케팅 등 지원) ① 구청장은 기업의 우수 제품을 발굴·홍보하고, 국내·외 판로 개척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.

② 구청장은 구에서 소요되는 물품(공사·용역)을 구매할 경우 관내 우수 기업 제품을 우선하여 구매할 수 있다.

제7조(기술개발 지원 등) ① 구청장은 기업의 기술력 향상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업·대학·연구기관(이하 ‘산·학·연’이라 한다)과 상호협력 및 교류를 통하여 기술개발사업 등을 시행할 수 있다.

② 구청장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위한 공동기술개발, 기술이전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다.

제13조(예산 지원) 구청장은 기업지원 및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 사항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.

1. 창업자 또는 예비창업자·중소기업자(소상공인)를 위한 교육비
2. 중소기업의 경영전략, 기술 및 생산성 향상에 필요한 각종 컨설팅 경비
3. 중소기업의 우수제품 홍보 및 국내·외 시장개척에 소요되는 경비
4. 산·학·연 기술개발사업 참가기업의 사업비
5.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업관련단체의 사업비
6. 그 밖에 구청장이 기업유치 및 기업지원 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

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·대행에 관한 조례

[시행 2023. 10. 12.] [서울특별시금천구조례 제1401호, 2023. 10. 12., 제정]

제4조(위탁 및 대행의 적정성 검토 등) ① 구청장은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탁하거나 대행하는 경우에는 그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.

1.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
2.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·안정성
3. 경제적 효율성
4. 위탁·대행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
5. 성과 측정의 용이성

6.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

7. 책임행정의 보장성

② 구청장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구청장이 직접 시행하는 것이 적절한 사무, 민간위탁의 방식으로 수행하는 것이 적절한 사무, 그 밖에 수탁·대행기관에서 직접 시행할 수 없는 성격의 사무를 위탁·대행해서는 안 된다.

제5조(위탁·대행 심의위원회 설치) 구청장은 위탁하거나 대행하는 사무의 적정성,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심의하기 위해 소관부서에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공기관 위탁·대행 심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제8조(구의회 동의) ① 구청장이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탁·대행하는 경우에는 미리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.

1. 사업비 전액에 대하여 국가의 보조를 받는 사무
2. 정부공모사업 참여 등 국가의 보조를 받는 사무로 수탁·대행기관이 미리 지정되어 있는 사무
3.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이 위탁·대행하는 사무로 해당 기관이 수행하지 않으면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
4. 정보화 사업 등 지방자치단체 간에 공동으로 추진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무로 지방자치단체 간 경비를 분담하여 시행하는 사무
5. 연간 위탁·대행금액(수탁·대행기관이 위탁·대행사무 처리에 드는 관리·운영비를 포함한다)이 5천만원 이하인 사업
6. 재난, 재해 대응 등 위탁·대행을 통하여 긴급하게 추진하여야 할 필

요성이 있는 사무

- ③ 제1항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받은 사무의 재위탁·재대행 또는 재계약에 대해서도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